이달의 특 집

2024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사업자 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5)

가. 개정취지

○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 3,000만원 → 5,000만원 – 어업소득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육아휴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 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가. 개정취지

○ 출산 · 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 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가. 개정취지

○ 기술개발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발명진흥법」§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노후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기준금액) 연간 1,5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11%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추 가>	□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과세대상 확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0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 ·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
</td><td>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 · 보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터 적용

10.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출산 ·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❷ ❶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❷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제81조의11, 같은 법(제19196호, 2022.12.31.) 부칙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시기 유예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행 ○ (좌 동) ○ 시행시기 – 2026.1.1. 이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소득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 가>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 (좌 동) – (좌 동)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선원 ·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 ·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출산 · 보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 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좌 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원금 반환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원금 반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

20.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사용자 본인의 직장 · 지역 건강보험료 <추 가>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사용자*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2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좌 동)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좌 동)
○ (좌 동)	
○ 아래 요건(❶+❷+❸+❹)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❷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 (좌 동)
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❹ 위탁자등*이 ❶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 (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2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제출기한 연장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❶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장관 ❷ 수입명세서 : 관할 세무서장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5. 자원봉사용역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❶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❷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❶ 5만원 → 8만원 – (좌 동) ❷ (좌 동)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도) 연 200만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15970호, 1998.12.31.) 부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제18706호, 2005.2.19.)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 계산서 발급비율(%)
<table>
<tr><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th>'19</th><th>'20~'21</th><th>'22~'23</th></tr>
<tr><td rowspan="2">중도매인</td><td>서울</td><td>85</td><td>90</td><td>95</td></tr>
<tr><td>서울 외</td><td>65</td><td>70</td><td>75</td></tr>
<tr><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td>85</td><td>90</td><td>95</td></tr>
</table>
○ 적용기한 : 2023.12.31.까지</td>
<td>□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 비율 조정
○ (좌 동)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table>
<tr><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th>'19</th><th>'20~'21</th><th>'22~'23</th><th>'24~'25</th><th>'26</th></tr>
<tr><td rowspan="2">중도매인</td><td>서울</td><td>85</td><td>90</td><td colspan="3">95</td></tr>
<tr><td>서울 외</td><td>65</td><td>70</td><td>75</td><td>80</td><td>85</td></tr>
<tr><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td>85</td><td>90</td><td colspan="3">95</td></tr>
</table>
○ 2026.12.31.까지</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 (좌 동)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곱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시 제외 <추 가>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 공급계약의 해제 · 변경 ○ 그 밖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3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애완동물 장묘 · 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 · 소매업 ❺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061호) : 2023.12.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세법 제88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가. 개정취지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 ~ 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 ~ 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신 설>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단,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❶ + ❷) ❶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공제율 * 최대 40% 적용 ❷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택 개념 구체화)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가. 개정취지

○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❶ 또는 ❷ 또는 ❸) ❶ 30세 이상인 경우 ❷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좌 동)

❸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 + 나) 가. 소유 주택 ·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❸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 · 반복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가. 개정취지

○ 세대 판정기준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판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❶ 사업소득, ❷ 근로소득, ❸ 기타소득, ❶~❸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 · 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 ~ 양도일	▢ 계산방법 명확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 ~ 양도일

05.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제159조의4)

가. 개정취지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❶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❷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좌 동)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92조)

가. 개정취지

○ 일반 국민의 양도소득세 개략적 이해 제고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규정 중
(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2)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3)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td><td>□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table>
<tr><th>구 분</th><th>계 산</th></tr>
<tr><td>양도차익</td><td>양도가액 - 필요경비</td></tr>
<tr><td>양도소득금액</td><td>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td></tr>
<tr><td>양도소득
과세표준</td><td>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td></tr>
<tr><td>양도소득
산출세액</td><td>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td></tr>
<tr><td>양도소득
결정세액</td><td>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td></tr>
<tr><td>양도소득
총결정세액</td><td>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td></tr>
</table></td></tr>
</table>

07.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table><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td></tr><tr><td>코스닥</td><td>2%</td><td>10억원</td></tr><tr><td>코넥스</td><td>4%</td><td></td></tr></table></td><td>□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좌 동)

□ 과세기준 완화
○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 (좌 동)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table><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td></tr><tr><td>코스닥</td><td>2%</td><td>50억원</td></tr><tr><td>코넥스</td><td>4%</td><td></td></tr></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td><td>□ 필요경비 합리화
○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좌 동) ○ '24.1.10. ~ '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❶ 소형 신축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 '24.1.10. ~ '5.12.31. (4) 주택유형 : 아파트 제외 ❷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2)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좌 동)

10.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가. 개정취지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 「주택법」 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❶ (양도자)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또는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❷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 ❸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❶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❶~❸ 요건 ❷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❸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❶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❷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❸ 양도자는 ❷에 따라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❹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❺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❷ · ❹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0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9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제156조의4 제2항, 제156조의6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5의2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04.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소득세법 제164조의5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5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임직원등 소득파악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❶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①(1) – ❷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 외국법인 본점 ·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②(1), (2)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또는 주식기준보상* * ❶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❷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제출자료)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등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0호) : 2023.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6호) : 2024.2.29.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 2024.3.22. 공포

01.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 과세체계 정비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좌 동)
– (수탁자 과세)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❶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❶ (좌 동)
❷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❸ (좌 동)
– (위탁자 과세) ❶~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❶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❷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 (원칙) 과세 제외 ○ (예외) ❶~❹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좌 동)
<추 가>	❺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 액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예외) ❶~❹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 *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 (좌 동)	○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추 가>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③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 합병차익 – (❶ – ❷) ❶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3% 재평가 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❷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 분할차익 – (❶ – ❷) ❶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❷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 이익잉여금, 의제배당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의제배당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 차감

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❶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❷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❸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좌 동)

<추 가>	❹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❺ 3% 재평가적립금(합병 · 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04.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법인세법 제19193호 부칙 제15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조의12, 같은 법 부칙 제10조)

가. 개정취지

○ 신고 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좌 동)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06.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4항, 제120조의22, 제120조의26)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❶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연결세율)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❷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❸ 결손금 공제 ·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❶의 금액 + ❷의 금액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❶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 연결세율)

❷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법인세법 제113조)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중소기업 간 합병 시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08.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범위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 (좌 동)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 (좌 동)
<추 가>	○ 외국법인의 주식등* * 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10.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 및 공제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 · 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추 가>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 (좌 동) – 조특법 §4 중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조특법 §4①]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1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가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금액 추가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전환손실 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 (원칙) 실제 보험료 · 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 · 비용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익인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 기준 규정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신 설>	▢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9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 발생률]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삭 제> ○ (좌 동)

○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좌 동)
▢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삭 제>
<신 설>	▢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

13.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 ·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인건비 <추 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 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14.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중소 · 중견기업 ○ 직 ·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

가. 개정취지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 ○ (좌 동)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table>
<tr>
<td>

<추 가>

○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td>
<td>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 (좌 동)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1}{B}$$

A : 지급한 손해배상금
B :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td>
</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6.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
<td>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 · 시행
○ (대상)
- ❶ 2018.2.13.전에 인 · 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 · 예술 · 환경보호운동단체
- ❷ 20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td>
<td>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좌 동)

</td>
</tr>
</table>

○ (지정방식 · 인정기간) – 20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 – 20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 ·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좌 동)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17.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 · 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 보험금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19.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추 가>	□ 대상법률 추가 ○ (좌 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 ○ (좌 동)
<신 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 등의 합계액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 (좌 동)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및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좌 동)

22.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을 받은 주주등·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신 설>	▢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 ○ (좌 동)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23.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2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 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0호) : 2023.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6호) : 2024.2.29.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0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법인세법 제98조의8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제98조의5 제2항, 제98조의6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5의2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기 조정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8호) : 2023.12.3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4호) : 2024.2.29. 공포

01.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 (좌 동)

납세의무자 – 단,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 분부터 적용

02.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개정취지

○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 90% ※ 소득금액비율 = $\frac{\text{A (이자 · 배당소득)}}{\text{B (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비율 계산식 합리화 ○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 · 배당소득 예 · 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관련 용어·범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 (용어) 금융회사등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추 가>	□ 용어 · 범위 조정 ○ 금융거래회사등 ○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 ·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 중앙회 • 보험회사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사, 신기술사 – 추가 기관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 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법인 · 단체
□ 정기 금융거래 정보 ○ (용어) 금융정보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추 가>	□ 용어 · 범위 조정 ○ 금융정보등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 · 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 · 자료

04.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 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 · 운영 가능 – 상호합의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 ❶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 ❷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③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법 §56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법 §59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91조)

가. 개정취지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 ·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❶ (신탁설정 · 이전 시)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❷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 · 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6.1.1. 이후 자료 제출)

0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②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48조)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가. 개정취지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구체화 *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 ○ 위탁자가 ❶신탁계약 해지권, ❷수익자 지정 · 변경권 또는 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 □ 해외신탁재산 가액 ❶ 원칙 : 시가 – 현금 · 상장주식 · 상장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 · 가상자산 : 시가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 * 1)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일 – 그 외 해외신탁재산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액 ❷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가액의 10%(최대 1억원) ○ 취득자금출처 미소명 · 거짓소명금액의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6.1.1. 이후 자료 제출)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범위 ○ 법인 <단서 신설> ○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②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그룹의 정의 ○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③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정의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❶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❷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❸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❹ 위의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④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지배지분 범위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배지분의 정의 ○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지분 <신 설>	▢ 지배지분 정의의 명확화 ○ (좌 동) ○ 국부펀드*가 소유한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 국제수지 균형, 재정수요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정부가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⑤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신설)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 환율을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⑥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수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당연 제외)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임의 제외) ○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⑦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계산 시 미포함 <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원칙) 좌 동 ○ (특례) 고정사업장 결손이 다음 ❶ · ❷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결손에 포함 ❶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될 것 ❷ 본점 및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⑧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제4항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신 설>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좌 동) ○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❶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 계산 ❷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 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①~③ 모두에 해당) ①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아래 ❶ ·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❶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최종모기업 회계 기준 또는 인정 회계기준이거나 공인회계기준 ❷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공인회계기구가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 기업의 회계계정이 해당국가의 회사법 등에 의해 작성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②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가 아래 요건(❶~❹)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❶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 ❷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인정 ❸ 최소적용제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규정 ❹ 세율을 최저한세율(15%)보다 높게 규정 ③ (관리요건) ① · ②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⑩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 산식,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❶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❷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⑪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❶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❷기업별로 배분 ❶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❶ (좌 동)

배분비율 = 50% × $\frac{\text{해당 국가의 종업원수}}{\text{모든 국가의 종업원수}}$ + 50% × $\frac{\text{해당 국가의 유형자산}}{\text{모든 국가의 유형자산}}$ * 모든 국가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 ❷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배분비율 = 50% × $\frac{\text{해당 기업의 종업원수}}{\text{모든 기업의 종업원수}}$ + 50% × $\frac{\text{해당 기업의 유형자산}}{\text{모든 기업의 유형자산}}$ * 모든 기업 : 추가세액 배분받은 국가內 기업	❷ ① · 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 · 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⑫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좌 동)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 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⑬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좌 동)
<추 가>	○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차액은 ①,② 중 하나로 반영 ■ ① 차액 전부를 조정시점의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 시점과 이후 4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⑭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8호, 같은법 제7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 개별 계산*, ❷ 투시과세처리**, ❸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단서 신설>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좌 동)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처리가 가능한 경우 : 아래 ① 또는 ② 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이익을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경우 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경우 □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 ○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⑯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신 설>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0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⑰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 납부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신 설>	▢ 신고 · 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좌 동) ○ (좌 동)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❶~❺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❷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❸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❹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❺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 20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02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2호) : 2023.12.3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7호) : 2024.2.29. 공포

0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결혼 ·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❹ (증여재산) 증여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 해제 사유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산세 면제 범위 ❶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❷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 × ❶ × ❷ ❶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❷ 1일 10만분의 22(국기령§27의4)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신 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좌 동)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하지 않을 것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 요건 완화 ○ (좌 동)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기타 사후관리 요건 ○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04.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 · 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 평가방법 개선 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 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1.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좌 동)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 ❶, ❷ 중 선택 가능 ❶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❷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좌 동)
<신 설>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규칙에 규정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